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06
----------	-------

발의연월일 : 2026. 3. 27.

발 의 자 : 서미화 · 허성무 · 박지원
서영석 · 김한규 · 이연희
이수진 · 이정문 · 김원이
김준혁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마약류 신고 보상금은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고 수사 개시 후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 등에게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함.

이에 적기 수사를 위하여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발각 전·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함.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기간 중 마약류취급자가 업무를 한 경우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마약류를 취급한 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하 “마약류소매업자등”이라 함)는 별도의 허가 또는 지정 없이 마약류 취급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할 수 없음.

이에, 마약류소매업자등이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간 동안 업무를 수

행하는 경우 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갈음하는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마약류를 취급한 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하 “마약류소매업자등”이라 함)에 대해 허가 등의 취소처분 대신 12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함(안 제44조).
- 나. 마약류 범죄가 발각되기 전·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까지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함(안 제5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에 고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이하 “마약류소매업자등”이라 한다)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이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카목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고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4조 본문 중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을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그 범죄의 범인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를 “신고, 고발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①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그 약품의 성분·처방 등을 변경함으로써 그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① ----- ----- ----- ----- ----- ----- ----- ----- -----, ----- ----- ----- ----- ----- ----- ----- ----- ----- ----- -----,
1.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가. ~ 허. (생략)	1. ----- ----- ----- 가. ~ 허. (현행과 같음)

<신 설>

2.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가. ~ 차. (생략)

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
를 한 경우 <단서 신설>

② ~ ④ (생략)

제54조(보상금) 이 법이나 그 밖
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
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
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이하 “마
약류소매업자등”이라 한
다)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이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

--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
-----경우. 다만, 제1호고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보상금) -----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
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그 범죄
의 범인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
-----.
-----신고,
고발 또는-----

다.	--.
----	-----